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28]

## 의견서

2020. 8.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 1. 개정안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①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모욕 정보’라 함)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취급 정지·제한 명령 대상 및 임시조치 대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② 이러한 정보를 유포한 경우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동일한 형(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③ 나아가 이러한 정보에 의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 ④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개정이유상 친고죄 조항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오류인 것으로 보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2. ‘모욕 정보’의 명확성 원칙 위반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음(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본 개정안에서 ‘모욕 정보’는 규제 대상 정보를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

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혐오', '차별', '선동'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라는 기준 역시 상대방의 감정에 의존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표현물 규제 및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표현물이라면 모두 규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자의 자의에 따른 사적 검열(삭제) 및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위험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임.

- 더군다나 이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상 형사처벌 규정에 더 높게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 현재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 행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규율될 수 있고, 이러한 모욕죄 역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감정 표명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UN의 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sup>1)2)</sup>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이에 더 나아가 '혐오', '차별', '선동', '굴욕감', '혐오감'과 같은 더욱 추상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규제 및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반하는 위험적 법안임.

### 3. 자살 결과 발생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부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부분

1) General Comment 34, para. 47, “[P]enal defamation laws. . .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2) 라 튀 한국보고서, para 27. “With regard to opinions,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

- 형사법은 책임주의, 즉,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며, 책임의 범위를 넘는 형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함. 책임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그러나 모욕적 표현(행위)과 상대방의 자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상대방의 자살은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라고도 보기 어려움. 그런데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는 중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임.

-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는 보호법익이 개인의 인격권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법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4. 결론

- 본 개정안은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및 형사처벌 대상 표현을 정의하고, 인과관계와 예측가능성이 없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